



서울고등법원

제 10 행정부

판 결

사 건 2014재누169 재심청구의 소
 원고(재심원고) 임그루
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에이(a)동 103호
 피고(재심피고)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
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
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
 대표이사 이석채
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5. 선고 2013재누148 판결
 변 론 종 결 무변론
 판 결 선 고 2014. 10. 10.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재심청구취지







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.

이 유

원고(재심원고,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)는 2014. 8. 6.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14. 8. 25. 재심소장 등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, 제1항, 제120조, 제122조에 의하여 '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(재심피고)를 위하여 3,000,000원을 공탁할 것'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,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은 2014. 9. 2.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, 그럼에도 원고는 그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08조,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김명수	<u>김명수</u> 
	판사	여운국	<u>여운국</u> 





판사

권순민

권순민





정본입니다.

2014. 10. 13.

서울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이은숙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(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